

제828호

무주 공보

2026. 9. 4.(금)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무주군 공고 제2026-965호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무주군수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를 현행 용어로 개정하고 세분화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

2. 주요내용

- 가.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와 내용 세분화
- 나. 관리비용에 대한 주체 구체화(안 제14조)
- 다. 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 개최 체계화(안 16조~19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16,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 전자우편: imseonyeong@korea.kr
- 팩스: 063-324-90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전화 063-320-2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무주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자대표협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시설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 조치)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범위 및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
2.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 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비용) 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마을상수도의 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 비용은 전기료·약품비·소모품비 등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구별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①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 비용의 분담 및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는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제14조에 따른 관리 비용의 가구별 분담액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협의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

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정하는 사항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해당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가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상수도의 관리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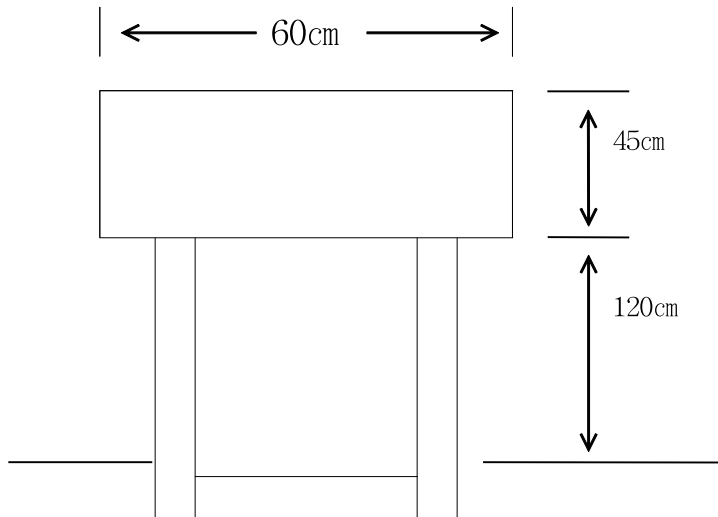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자대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 색: 흰색

글씨: 청색

○ 내용문

알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또는 마을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위치: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 연락처: 무주군 담당부서 (전화)

[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관 리 번 호		제 호									
구분	항목	내 역									
일반 현황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읍·면 리 마을									
	협의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 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 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취수 시설	보유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집수정 1								
			집수정 2								
			양수모터1								
		양수모터2									
	정수 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 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중	직경	연장	관중	직경	연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개 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 내용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 시설폐지의 경우는 뒷면에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무주군 제 호	점검일자: . . . 점 검 자: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 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 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 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 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 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 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기 타			

※ 매 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무주군 제 호	점검일자: .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 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마을상수도 사용자의 협의회 설치 의무	2. 유형
		신설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급수운영팀장 하양수, 급수운영주무관 임선영	
4. 근거법령 등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2항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마을상수도 사용자(해당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	
6. 규제 존속기한	별도 설정 없음 ※ 마을상수도의 지속적 운영 특성상 존속기한 설정이 곤란하며, 추후 조례 개정 시 재 검토 예정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제16조(협의회의 설치)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 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규제》 ○ 제16조(협의회의 설치) ①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 비용의 분담 및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 한다. ②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는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한다. → 신설: 마을상수도 사용자에게도 협의회 설치 의무 신규 부과(제2항)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마을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제1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하의 마을 주민에게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임.

마을상수도는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소규모급수시설과 달리 마을상수도 사용자의 자치적인 관리·협회의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 관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관리 비용 분담, 오염 예방, 소독 등 위생 관리에 관한 주민 간 자율 조정 기제가 미비한 상태임.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마을상수도는 불특정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용수 공급시설로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사용자 협의회가 없을 경우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여 시설 청결 유지, 소독 실시, 관리 비용 분담 등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미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에게는 동일한 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마을상수도 사용자에게 동일 수준의 자치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함.
- 협의회를 통한 주민 자율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시설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에도 기여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소규모 마을의 경우 고령화·인구 감소로 인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협의회 설치 후 구체적인 운영 방법, 비용 분담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협의회는 별도의 법인 설립이나 행정 절차 없이 사용자들의 자율적 합의로 구성·운영되는 것이므로 설치 부담이 크지 않음.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협의회는 사용자 간의 자율적 협의체로서 특별한 법적 형식 없이 구성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의 협의회 설치 의무는 현행 조례에

서 이미 시행 중이어서, 이를 준용하여 마을상수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함.

- 군은 협의회 구성 지원, 운영 지침 제공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협의회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불가.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현행 협의회 설치 규정은 마을상수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을상수도 사용자의 자율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함.
-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불가. 행정지도나 권고만으로는 다수 주민 간의 비용 분담, 위생 관리 등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우며, 분쟁 발생 시 해결 주체가 불명확해짐.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수도법」 및 관련 상위법령에서 마을상수도 사용자 협의회 설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복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 조례 내 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제1항)와 취지는 동일하나, 적용 대상 시설이 달라 중복이 아닌 대상 확대임.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마을상수도 사용자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시간·노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자율적 협의체이므로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나 행정 절차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인구 감소 마을의 경우 협의회 구성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소수 인원으로도 협의회 구성이 가능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마을상수도의 체계적 위생 관리 및 청결 유지를 통한 음용수 안전성 확보
- 관리 비용의 공정한 분담 기준 마련으로 주민 간 갈등 예방
- 시설 관리 주체의 명확화로 행정 민원 감소 및 군의 현장지원 효율성 제고
- 소규모급수시설과 형평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주민의 시간적 부담은 최소한의 수준이며, 마을 음용수 위생 관리 강화, 비용 분담 갈등 예방, 시설 관리 명확화라는 편익이 이를 명백히 상회함. 규

제 도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이 규제는 공공 음용수 시설의 자율 관리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으로, 시장 경쟁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기업활동 저해요소 없음. 이 규제는 마을상수도 사용 주민에게만 적용되며, 기업의 영업 자유에 영향이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한다”는 표현은 대상과 단위가 명확하여 수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협의회의 구성 방법, 운영 절차, 비용 분담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조례 내 다른 조항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타 시도 사례: 타 지자체의 소규모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에서도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사용자 모두에게 협의회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수도법」 시행령 및 환경부 지침에서도 마을상수도의 자율 관리 체계 구축을 권장하고 있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전담 기구나 인력 신설 없음. 협의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이므로 군의 추가 예산 소요는 없음. 다만, 협의회 구성 지원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등 소요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함.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협의회 설치하는 주민 간 자율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요구가 없으므로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임.